

# 예 산 총 칙

201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226,256	1,206,788
특별회계	40,226,256	1,206,788
공기업특별회계	33,826,020	1,014,78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999,210	449,976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826,810	564,804
기타특별회계	6,400,236	192,007
신정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	720,000	21,600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838,190	55,146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681,710	50,451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1,863,836	55,915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96,500	8,89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5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4년 명시이월 사업은 붙임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69,5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2,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